

선	기관외 장
람	



제14호 2023. 4. 5.(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117호 하천점용허가(변경)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120호 도로명주소(전물번호) 개별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3-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765호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아임장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광양시 공고 제2023-770호 도로지정공고	24

조 례

광양시 조례 제1995호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	26
광양시 조례 제1996호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광양시 조례 제1997호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광양시 조례 제1998호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39
광양시 조례 제1999호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광양시 조례 제2000호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52
광양시 조례 제2001호 광양시 심변영합평가 조례	57
광양시 조례 제2002호 광양시 양심필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64
광양시 조례 제2003호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34호 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 ~~~~~ 86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 2713)

하천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5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성명	광양시청(농산물마케팅과)
점용지역	위치	광양읍 칠성리 881-2 일원
	면적	8,826㎡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벚꽃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점용기간		2023. 3. 30. ~ 2023. 4. 2.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5.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69-38 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4.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7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442-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69-38	20230405	20081001	서천의 제방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867-3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1길 16 (성황동)	20230405	20210210	옛 마을이름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786-1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옥실로 137	20230405	20090623	옥곡의 옛 지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367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성지로 390	20230405	20081001	선교100주년 기념관에서 명명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205-7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로 100 (마동)	20230405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 이라는 옛 지명 인용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산단로 26-53	20230405	20180516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친구리 599-1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국사봉로 71	20230405	20081001	국사봉이라는 봉우리이름에서 인용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구상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444-1
	성명	강남원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443-6
	면적	391㎡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수목의 식재
점용기간		2023. 4. 3.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2023. 상반기 준공 예정인 ‘금천계곡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야영장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시 해당지역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의 참여 기여 부여

3.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광양시에서 설치하는 야영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화함.(제명)

- 광양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야영장에 ‘금천계곡 야영장’을 신설함.(안 제2조)
- 금천계곡 야영장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별표 1]에 추가함.
(안 제6조)
 - 이용료/1박: 비수기 35,000원, 성수기·주말 40,000원
 - 전기이용료/1박: 3,000원
- 야영장에 대한 관리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로 세분화하고, 수익계약으로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함.
(안 제11~12조)
-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4. 5. ~ 4. 25.(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관광과장, 전화: 061-797-3360, FAX: 061-797-4187, E-mail: heoyh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내”를 “광양시에서 설치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2. 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

제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을”을 “시설이용료를”로 한다.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제목 “관리 및 위탁”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마을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중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 (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데크규격	이용료(1박)		이용시간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5*6m	30,000	35,000		
전기이용료		3,000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데크규격	이용료(1박)		이용시간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전기이용료		3,000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제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이곳 000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 입장 및 퇴장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 이용자 수칙 미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용료는 선불입니다.

3. 장 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 이용을 금합니다.

4.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앰프(노래방 기기) 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며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야영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용하고 남은 숯은 반드시 잔불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 이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전기 이용으로 인하여 야영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내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위치) <u>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둔다.</u>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u>이 경우 미리 야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제한 사유</u>	<u>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u>광양시에서 설치한-----</u>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u>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u> 2. <u>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u>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 ----- ----- --.<u>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u>

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위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려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시설이용료를-----

-----.

제10조(관리) ①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u>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u> <u>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u>
제11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⑤ (생략)	제13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⑤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지도·감독) ①~③ (생략)	제14조(지도·감독) ①~③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설>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14조(시행규칙) (생략)	제17조(시행규칙) (현행 제14조와 같음)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 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 0	25,00 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5*6m	30,00 0	35,00 0		
전기이용료		3,000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 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5*6m	30,000	35,000		
전기이용료		3,000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 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전기이용료		3,000		11:00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 일 및 공휴 일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 광양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100 분의 30 감액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7조제1항 관련)

-----	---
- 국가 또는 -----	---
-----	---

--	

-	

-----	---

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장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 이용자 수칙 및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 이용을 금합니다.

4.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앰프(노래방 기기) 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며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야영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별표 4]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이곳 000----- 바랍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
며, 이용료는-----.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용하고 남은 숯은 반드시 잔불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 이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전기 이용으로 인하여 야영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 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파
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
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0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3. 4. 5.

광 양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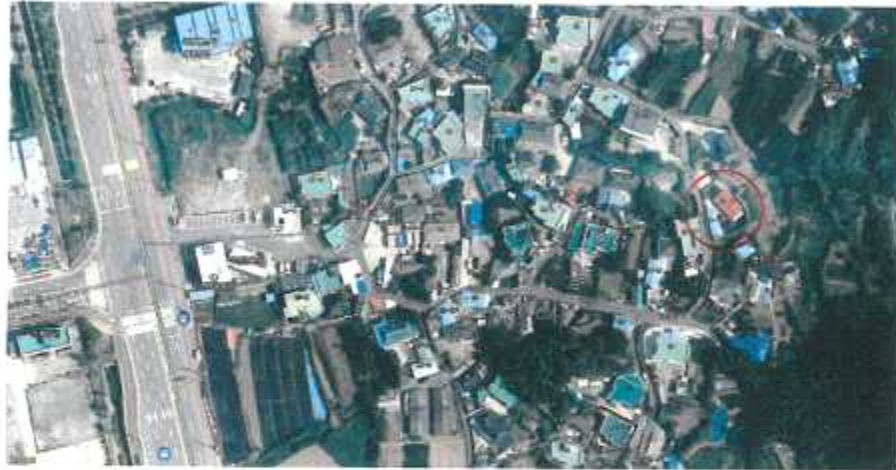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3. 4. 5. ~ 2023. 4. 20.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244-1번지	김 혜 민	22.0m	4.0m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244-1번지	5.0㎡	동 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 / 600, [] 1 / 1,200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5호

붙 임 :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종 계약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은 지양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광양시의 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제4조의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

서, 협정서, 약정서,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관내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마을방송시스
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6호

붙 임 :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양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재해·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3. “마을”이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따른 각 리·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광양시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각종 행정정보와 시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 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읍·통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보수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교통안전 증
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7호

붙 임 :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 교통혼잡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지도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선진”을
“교통안전문화,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선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6.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 활동
7.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4호) 중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교통 봉사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해야하며, 교통봉사단체의 활동 실적을 반기별 한차례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u><신 설></u> 1. (생 략) 2. <u>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 모단체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u> <u><신 설></u> 3. <u>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사업</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8조(재정 지원 등) ① ----- ----- ----- -----. ----- -----. <u>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u> <u>2. (현행 제1호와 같음)</u> <u><삭 제></u> <u>3. 교통혼잡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지도</u> <u>4. 교통안전문화,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선진 -----</u> ----- <u>5.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u> <u>6.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 활동</u> <u>7.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복장 및 장비</u>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8. -----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교통 봉사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해야하며,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차례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u>②</u> (생 략) <u><신 설></u>	<u>⑤</u> (현행 제2항과 같음) <u>⑥ 시장은 교통안전증진을 위한</u> <u>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u> <u>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u> <u>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u> <u>에 가입할 수 있다.</u>
---	--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8호

붙 임 :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양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광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6조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육장·경찰서장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 등의 요청 사항
3.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 참여와 활동 방안
4.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5.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기관은 과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양시의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역협의회 운영) 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
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학교
폭력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
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예방교육·홍보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를 “범죄예방 활동”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99호

붙임 :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을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와 신체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3. 관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비입소 아동 및 가정 지원 사업
4. 관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조제2항제1호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 지자체에서”를 “광양시”로, “주의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비밀엄수)”를 “(비밀 누설 금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양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u>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u>	4. ----- <u>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 ----- ----- -----	제5조(재정지원) ----- ----- -----

필요한

<신 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

--다음 각 호의 필요한-----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 료와 신체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치 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 업

3. 관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
동, 비입소아동 및 가정 지원
사업

4. 관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 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

의사항) ① (생 략) ② <u>관할 지자체에서</u>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u>주의하여야</u> 한다. ③ (생 략) 제15조(<u>비밀업수</u>) (생 략)	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광양시</u>----- ----- ----- ----- <u>하여야</u>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u>비밀 누설 금지</u>) (현행과 같음)
---	---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0호

붙임 :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유포·배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또는 단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
4.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설치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4. 불법 촬영 등 영상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외 그 밖의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자인 및 홍보 활동에 2명 이내 전공 청년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한다.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1호

붙 임 :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양시장이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성평등에 참여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광양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광양시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소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

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사례 전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또는 정책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2호

붙 임 :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

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체계
3. 양성평등에 대한 추진 과제와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6조(시행계획 및 시행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양성평등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제19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양성평등에 참여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정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직 등의 참여 촉진) ① 시장은 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표창·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의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23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 모성권과 부성권을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양성평등한 가정 지원) 시장은 시민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양성평등의식 향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등)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복지 증진) ① 시장은 지역과 나이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 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32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류 지원
2. 전통문화 행사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 지원
4. 여성 안전 및 여성 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
5.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 사업
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제36조(시민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공헌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 양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4.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1조(기금의 심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기금조성 전액을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 추진 단체 등이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7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결산 및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제48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시와 소속 기관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주요 정책 및 추진 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52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와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의 위원회”를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부개정 전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3. 16.)에서 의결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3호

붙 임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하단의 “자로”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가뭄 예·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이거나 주암댐, 섬진강댐 등 수어댐의 상수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가뭄 대응단계 「심각」 단계에 해당될 경우 물 절약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지원)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급수설비의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조손가정, 장애인
2. 절수설비(기기) 설치의무대상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u>자로</u>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 ----- ----- ----- ----- <u>사람</u> <u>으로</u>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삭 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	<삭 제>
3.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토목·기계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삭 제>
제40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요금등의 감면)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

현행	개정안
9. ~ 12. (생략) <신설>	<u>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가뭄 예·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이거나 주암댐, 섬진강댐 등 수어댐의 상수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가뭄 대응단계 「심각」 단계에 해당될 경우 물 절약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u>제41조의3(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지원)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급수설비의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u>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조손가정, 장

현행	개정안
	<u>애인</u> <u>2. 절수설비(기기) 설치의무대상</u> <u>중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u> <u>및 공중화장실</u>

**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4월 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4호

붙 임 : 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

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영상기록의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사용자가 민원인의 욕설, 헐박, 성희롱 등에 대한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음성의 녹음 및 음성기록의 파일 보안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부서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기준) 사용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사용자에게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사용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 다만, 사전에 고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의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기록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를 즉시 제5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확인
3.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제5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휴대용 보호장비 및 시스템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부서의 장
2. 부: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부서의 주무팀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담당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해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부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법적조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를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 하고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물 관리 현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제작 등) ① 사용자는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사용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